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일, 장종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종태 의원)

현행법은 수입자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정비

□ 현행법 제5조¹⁾에서는 수입식품등²⁾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

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함)는 해당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³⁾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⁴⁾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등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3.>
-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② 법 제5조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같은 법 제5조의25)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별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누계, '25.11. 기준)

합계*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52,548	6,711	8,869	25,269	1,365	2,960	13,453

* 총 193개국, 전체 58,627개 업소에서 품목별 중복업소 6,079개소 제외

-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아울러 수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해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문제가 있음.

- 참고로, 2023년 6월 13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471호)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수입자등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유사입법례〉

「먹는물관리법」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 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

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 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 또한,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각각 두어 이 법 시행 전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6)하고 있는바,

안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6)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2.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 기준 변경

□ 현행법 제23조제1항7)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
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등으로
규정⁸⁾하고 있음.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 다)
2. 건강기능식품
3. 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
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품목은 매출액에 따른 단계적 의무화가 완료되어 2022년 12월 이후 매출액과 관계없이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영업자는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부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⁹⁾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영업자는 수입식품에 대한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

5.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등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영업자: 2016년 2월 4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자: 2016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업자 및 2014년 이후 영업자가 된 영업자: 2017년 12월 1일
4.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영업자: 2016년 2월 4일
5.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영업자: 2016년 6월 1일
6.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2017년 6월 1일
7.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
8.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영업자: 2016년 12월 1일
9.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영업자: 2017년 6월 1일
10.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자: 2017년 12월 1일
11.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업자 및 2016년 이후 영업자가 된 영업자: 2018년 6월 1일
12.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영업자: 2019년 12월 1일
13.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영업자: 2020년 12월 1일
14.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영업자: 2021년 12월 1일
15.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영업자 및 2017년 이후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한 영업자: 2022년 12월 1일

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액의 110%를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인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개정안은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 영업자의 기준을 ‘일정 매출액’에서 ‘일정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자인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액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⁰⁾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입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수입식품등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수입신고서에는 제품명, 총수량, 순중량, 과세가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수정함.

또한,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인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기준을 ‘수입액’에서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기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하도록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의2 및 부칙 제2조).

또한,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인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기준을 ‘수입액’에서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기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부정한”을 “그 밖의 부정한”으로 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그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을 “그 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를 “제1항에 따라 등록이”로,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를 “등록이”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중 “수입액”을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수입자등이 <u>제1항 또는 제2항</u> <u>에 따라 등록 또는</u> <u>변경 등록을 신청</u> <u>한 사항 중 추가</u> <u>확인이 필요한 경</u> <u>우에는 수입자등에</u> <u>게 필요한 자료를</u> <u>요청할 수 있다.</u> ④(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현 행과 같음) ③ ----- ----- -제1항, 제2항 또는 <u>제6항에 따라 등록,</u> <u>변경 등록 또는 유</u> <u>효기간의 연장</u> ----- ----- ----- ----- ----- ----- ----- ----- ④(현행과 같음) ⑤ ----- ----- ----- ----- ----- ----- -----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개 정안과 같음) ③ ----- ----- ----- ----- -제7항----- ----- ----- ----- ----- ----- ----- ----- ----- ----- ----- ----- ----- ④(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 -----

있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⑥ ~ ⑨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그 등록을-----.
② 제1항에 따라	② 제1항에 따라	② 제1항에 따라

<u>등록이 취소된 경</u> <u>우 해당 해외제조</u> <u>업소의 등록 또는</u> <u>변경 등록을 신청</u> <u>한 수입자등은 등</u> <u>록이 취소된 날부</u> <u>터 2년이 경과하기</u> <u>전에는 제5조제1항</u> <u>에 따른 등록 신청</u> <u>을 할 수 없다.</u>	<u>등록 또는 유효기</u> <u>간 연장이 취소된</u> <u>경우 해당 해외제</u> <u>조업소의 등록, 변</u> <u>경 등록 또는 유효</u> <u>기간 연장을 신청</u> <u>한 수입자등은 등</u> <u>록 또는 유효기간</u> <u>연장이 취소된 날</u> <u>부터 2년이 경과하</u> <u>기 전에는 제5조제</u> <u>1항에 따른 등록</u> <u>신청을 할 수 없다.</u>	<u>등록이</u>----- ----- ----- ----- ----- -----<u>등록이</u>----- ----- ----- ----- ----- -----.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 식품등을 추적하여	① ----- ----- ----- ----- ----- ----- ----- ----- ----- -----	① ----- ----- ----- ----- ----- ----- ----- ----- ----- -----

	부칙 <u>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제3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부칙 <u>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u> <u>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u>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을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 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④ (생 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⑥ ~ ⑨ (생 략)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5</u>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u>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 ----- ----- <u>제5조제1</u>

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u>매출액</u>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 <u>-----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u> ----- ----- ----- -----. ② (현행과 같음)
---	--